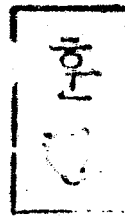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

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156 / 전송 731-6562

문서번호 법무02124-1062

시행일자 1992. 7. 7

경유

수신 (제 1 안) --- 내부결재

참조

제목 훈령발령

취급			시	장	
보존					
기획관리실장	전결				
법무 담당관					
법 제 계 장					
기안	이 중 투		협조		

훈령 제 754 호

1.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관리운영규정을 별안과 같이 시보에게재 공포하고자 **발령** 하고자 합니다.

첨부 : **발령**안 1부, 끝.

(제 2 안)

수신 : 공보관

제목 : 시보게재

1.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관리운영규정을 시보에 게재 **발령**할 것.

첨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754 호 2부, 끝.

서울특별시장

(제 3 안)

수신 : 예산담당관

제목 : 훈령발령

1. 예산 10220-800(92. 4. 16)호와 관련임.

1.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관리운영규정을 별점과 같이 시보에 게재 **발령** 하였으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.

첨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(754) 호 1부, 끝.



서울특별시장

서울특별시 재정수용차입금관리운영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 92 년 7 월 일

서울특별시장

인

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관리운용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재정부융자기금설치조례(이하 "조례"라 한다)와 조례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, 서울특별시재정부융자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금운용관의 지정) ①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.
② 기금출납명령관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공무원은 예산담당관으로 한다.

제3조 (기금운용계획의 편성) 기획관리실장은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명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편성지침을 수립, 매년 9월 20일까지 관련회계 및 기금의 주관과장, 사업소장, 구청장(이하 "관련부서의 장"이라 한다)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조 (기금운용계획의 작성) ① 관련부서의 장은 제3조의 기금운용계획편성지침에 의거 예탁 및 융자요구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첨부,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기금운영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의결이 끝난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 (수정기금운용계획) ① 기금운용계획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수정요구서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수정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제6조 (기금운용계획의 통지) 기획관리실장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용을
관련부서의 장 및 기금위탁관리기관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 (기금의 집행) ① 관련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즉시
월별예탁계획서와 월별자금소요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기획관리실장은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월별예탁계획서 및 월별자금소요계획서를
참작하여 월별, 분기별 자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예산담당관은 제2항의 월별, 분기별 자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심의회의
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,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 (징수결정 및 통지) ① 기금출납공무원이 세입의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결의서를
작성하여 징수부의 징수결정액란을 기록하고 납부서를 발급,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착오,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을 취소,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
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제9조 (수입금의 취급 및 기장) 기금위탁관리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
통지서를 즉시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기금출납공무원을 영수필
통지서에 의하여 수입 일계표를 작성하고 세입정리부를 기장한다.

제10조 (장부 및 서식) ① 기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

1. 세입, 세출 총괄부 (별지 제1호 서식)
2. 세입정리부 (별지 제2호 서식)
3. 세출정리부 (별지 제3호 서식)
4. 예수금관리대장 및 차입금관리대장 (별지 제4호 서식)
5. 융자금관리대장 (별지 제5호 서식)
6.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

② 장부 및 서식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재무회계
규칙을 준용한다.

제11조 (심외회의 운영) ① 예산담당관은 조례 제9조제1항 각호의 심외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외요구서(별지 제6호서식)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 때에는 심외의결서(별지 제7호 서식)를 작성,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 (결산서의 작성) ①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이 작성한다.

② 예산담당관은 수입,지출에 관한 결산사항과 기타 관련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심외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3조 (결산설명자료) 관련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, 동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세입·세출총괄부

일 자	적 요	수입액	지출액	잔 액

(별지 제1호 서식)

세입정리부

과목(항) (세항) (목)

일 자	적 요	결 의 서 번 호	운용계획액			집 행 액				운용계획액 과 집행액 과의 차액	
			당초 운용 계획액	증 감 액	계	징수 결정액		수 입 액			잔 액
					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	

(별지 제4호 서식)

예수금 및 차입금 관리대장

과 목					예수(차입)년도			번호		
사 업 명 칭					예수(차입)금액					
예수(차입)기관					예수(차입)년월일					
이 율	당 초	변 경				외결번호	계 호			
		19 . . .	19 . . .	19 . . .	19 . . .					
	%	%	%	%	%	외결일자	19 . . .			
예수(차입)조건	년거치			년상환		회불	비 고			
예 수 상 환 (차입)	년	월	일			원				
	년	월	일			원				
	년	월	일			원				
	년	월	일			원				
	년	월	일			원				

(전 면)

상 환 예 정					상 환 현 황				
년월일	원 금	이 자	계	미 상 환 액	년월일	원 금	이 자	계	미 상 환 액

(후 면)

용자금관리대장

과 목					용 자 년 도			내역번호		
사 업 명 칭					용 자 금 액					
용자기관(회계)					용자 년월일					
이 율	당 초	변 경				외결번호	계 호			
		19 . . .	19 . . .	19 . . .	19 . . .					
	%	%	%	%	%	외결일자	19 . . .			
용 자 조 건	년거치		년상환		회불		번호			
용 자 상 환	년 월 일				원		비 고			
	년 월 일				원					
	년 월 일				원					
	년 월 일				원					
	년 월 일				원					

(전 면)

상 환 예 정					상 환 현 황								
년월일	원	금	이	자	계	미상환액	년월일	원	금	이	자	계	미상환액

(후 면)

<별지 제6호 서식>

서울特別市財政投融資基金 運用에 대한 審議要求書

件 名 :

위 事項에 對하여 審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9 .

添附書類 :

1. 中期財政計劃 및 事業計劃書
2. 成果內譯書
3. 事業費明細書
4. 償還計劃書
5. 其 他

豫算擔當官

서울特別市財政投融資基金運營審議會 委員長 貴下

